#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6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권인숙·강득구·권칠승

김철민 • 박찬대 • 서동용

서영석 · 송옥주 · 양경숙

윤영덕 • 윤후덕 • 이수진

정춘숙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나 학사비리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 이에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처분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내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942건중징계 감경 또는 불응한 경우가 449건(42.6%)에 이르는 등 징계의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징계사유 및 절차 등도 학교법인별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해임 요구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초·중·고등학교 등을 관할하는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할청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및 제66조의2).
- 나. 관할청이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 속 사무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의4 신설).

- 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학교법인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에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제70조의5 신설).
- 라.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징계·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청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중 "재심의 요구"를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징계위원회에"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는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 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7조 중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

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로 한다.

제70조의4 및 제7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4(사무직원 해임 등의 요구) ① 관할청은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제70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2. 제70조의3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때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70조의5(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4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 용권자가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절차 등은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4조의 제목 "過怠料"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의"를 "교원 및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도 포 함한다)
- 5. 제70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 지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 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관할청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법관,검사또는변호사로 5년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부교수이상으로 재직중인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퇴직한사람 4.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사람

제66조의2(징계의결의 <u>재심의 요</u> 저 구) ① (생 략)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 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
한 및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l 66조의2(징계의결의 <u>재심의</u> ) ①
(현행과 같음)
②
<u>*1</u> 4
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
회에, 제4조3항에 따른 관할청
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u>.</u>
③
<u>제62</u>
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
를 요구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 ④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 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 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 하여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 의위원회는 관할청과 임용권자 에게, 교원징계위원회는 관할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 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 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 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 다.

대하여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의3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u>제61조,</u>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70조의4(사무직원 해임 등의 요구) ① 관할청은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 당 사무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 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0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 립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 <신 설>

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2. 제70조의3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70조의5(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4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반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내용이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사유에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第74條(過怠料) ① 사립학교 교원 제74조(과태료) ① -----교원 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직원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다.

③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관 한 절차 등은 제66조의2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 무직원"으로 본다.

및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을 위반 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7 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 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 5. 제70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 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 ⑤ (현행과 같음)